



보건복지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안)」 안내

1.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환자안전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제4항
3.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 시행('21.1.30.)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전문가 자문(6회) 및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의무보고 대상·시기 판단기준, 조문별 사고해석·주요사례 등
 - ※ 동 가이드라인은 현재까지의 관련 제도 및 전문가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것으로 제도 개정 등에 따라 추후 지속·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4. 이에 따라, 귀 협회(단체)께서는 동 가이드라인을 관련 기관에 배포 또는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리시어 의무보고 절차 등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대한병원협회장, 대한한 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간호협회장,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 바른사회 시민회의 대표, 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대한환자안전학회 회장, 한국의료질향상학회장,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장, 대한약사회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주무관	김성민	행정사무관	이효진	의료기관정책과장	전결 01/05
					오창현

협조자

시행 의료기관정책과-53 (2021.01.05.) 접수 중앙환자안전센터-9 (2021.01.06)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의료기관정책과
 전화 044-202-2479 전송 044-202-3926 / pinky0221@korea.kr /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